

도서관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1987. 10.

제안자: 문교공보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가. 도서관진흥기금의 재원조성에 기금이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추가로 신설하고, 특수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 나. 기타 조문의 정리 및 자구수정을 위한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 가. 도서관진흥기금 재원조성에 제3호를 신설하여 “기금이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규정을 둠(안 제10조 제2항)
- 나. 정관명령중 “정관명령”을 “업무의 정지”로, “정관”을 “그 업무의 정지를”로 함(안 제27조)
- 다. 부칙에 특수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특수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둠(안 부칙 제2항)

도서관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제27조(제목) “정관명령”을 “업무의 정지”로 하고 본문중 “정관”을 “그 업무의 정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특수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으로 본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도서관진흥기금) ①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시설·운영 기타 도서관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정부출연금</p> <p>2.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p> <p>(신 설)</p>	<p>제10조(도서관진흥기금)</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u>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u></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7조(정관명령) 시·군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제27조(업무의 정지).....</p> <p>.....</p> <p>.....</p> <p>.....</p> <p>그 업무의 정지를</p> <p>1. (현안과 같음)</p> <p>2. (현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p> <p>.....</p> <p>.....</p> <p>.....</p> <p>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특수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으로 본다.</p>